



##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뉴욕시 실내 음식 서비스 임시 지침

이 문서를 읽고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기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61호**에 의해, 뉴욕시의 실내 음식 서비스는 본 임시 지침에 따라 **2020년 9월 30일** 수요일부터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목적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뉴욕시 실내 음식 서비스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New York City Indoor Food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뉴욕시 실내 음식 서비스 코로나19 임시 지침")은 뉴욕시 지역 음식 서비스 사업체의 소유자/운영자, 직원 및 계약자와 고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뉴욕시의 식당, 시설 및 기타 음식 벤더 및 영업장소 내 실내 음식 서비스 및 식사에 적용됩니다. 효력이 발휘되면, 뉴욕시의 음식 서비스 시설은 본 지침에 따라 고객이 앉을 좌석이 있는 실내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 바 서비스는 현재 폐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즉, 바에 앉거나 서비스 제공 불가, 모든 알코올 음료는 테이블에 제공되어야 함). 또한 아래 자세히 기술된 바와 같이 현지 시간으로 자정(오전 12:00)부터 오전 5:00 사이에는 실내 식음료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자정(오전 12:00)에 중단해야 하며 오전 5:00까지 재개할 수 없습니다.

발표된 바와 같이 뉴욕시는 400명의 집행 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구축 및 배치하여 뉴욕시에서 실내 음식 서비스 및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여기에 포함된 주정부 발행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지침을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은 **1-833-208-4160**에 전화하거나, **855-904-5036**으로 **'VIOLATION'**이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온라인 **신고 양식**을 작성해 해당 위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임시 지침은 공중 보건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전파의 변화를 포함하여 그 영향을 평가하고 소유자/운영자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 점유 인원 제한과 관련된 이 지침은 코로나19 전파율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늦어도 2020년 11월 1일까지 수용 인원을 25%에서 50%까지 늘릴 것을 고려하여 재평가될 것입니다.

기타 야외 및 테이크아웃/배달 음식 서비스의 경우, 사업체들은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야외 및 테이크아웃/배달 음식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Outdoor and Take-Out/Delivery Food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개략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지침은 최소 요구사항이며 소유주/운영자는 추가 예방조치나 제한 사항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발표 당시의 가장 잘 알려진 공중보건 관행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지침의 기반이 되는 문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자주 변경됩니다.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는 음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또한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이를 음식 서비스 운영 및/또는 현장 안전 계획에 통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미국 식품 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및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은 코로나19가 음식을 통해 전염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음식 서비스 시설에 대한 뉴욕주 위생법 및 본 지침의 일부로 명시된 추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면 코로나19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배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20년 3월 7일에 행정명령 202호를 발령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16일 Cuomo 주지사는 주 전역의 식음료 시설의 모든 구내에서 음식과 음료의 소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 202.3호를 선포했습니다.

2020년 3월 20일 Cuomo 주지사는 모든 비필수 사업체에게 사무실 내 직원 기능을 종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202.6호를 선포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 지침에 따라 규정된 필수 기업은 대면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뉴욕주 보건부(DOH)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지침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12일에 Cuomo 주지사는 필수 사업체에 대해 직장에 있는 직원을 위한 안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16호를 공표했으며, 업무 중 고객 또는 대중의 일원과 직접 접촉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2020년 4월 15일에 행정명령 202.17호를 발행하여 만 2세 이상으로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천 안면 가리개로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에 Cuomo 주지사는 만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 수단을 이용하거나 입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호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덮는 안면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대중 또는 민간 교통의 모든 운영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에 Cuomo 주지사는 사업체 운영자/소유자가 안면 가리개 또는 마스크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입장을 거부할 재량을 승인하는 행정명령 202.34호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4월 26일에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사업체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에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공중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에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석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재개 2단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6월 3일 Cuomo 주지사는 주정부가 발행한 지침에 따라 재개 2단계에서 식당의 야외 식사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11일, Cuomo 주지사는 6월 12일에 재개 3단계가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6월 24일, Cuomo 주지사는 주의 여러 지역에서 6월 26일부터 재개 4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9월 9일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시의 실내 식사가 25% 수용 인원 제한 및 여기 포함된 추가 요건과 함께 9월 30일부터 허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시가 지침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주 경찰 태스크포스(State Police Task Force)와 함께 400명의 집행 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의 기준과 더불어 사업체는 반드시 보건부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이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에서 발행한 기타 지침 문서와 다른 경우에는 최신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 뉴욕시 내 책임있는 실내 음식 서비스에 대한 표준

다음과 같은 최소 주정부 표준 및 해당 연방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뉴욕시에서 어떠한 실내 음식 서비스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질병 통제 예방 센터,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국 노동부의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의 최소 기준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표준은 주정부가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뉴욕시에서 운영되는 모든 실내 음식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음식 서비스 현장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어느 경우든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표준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의 지침은 사람, 장소, 절차 등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I. 사람

### A. 물리적 거리두기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을 제외한 점유 인원 수 증명서에 의해 설정된 특정 구역의 최대 수용 인원의 **25%** 이하로 실내 수용 인원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설 내 **25%**의 수용 인원 에 해당하는 고객 수를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하며, 식당 내부의 직원 및 고객이 이러한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식당 외부의 사람들도 볼 수 있게도 해야 합니다(예: 문에 게시).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또는 고객이 음식 서비스 시설에 들어가기 전이나 직후에 체온을 측정받았고 체온이 **100.0°F** 이하인 경우에만 이들이 음식 서비스 시설에 입장도록 허용해야 합니다(아래 섹션 III: 절차, 하위 섹션 A: 선별 검진 및 검사에 설명됨). 또한
  - 책임 당사자는 각 단체의 한 사람이 음식 서비스 시설 입장 전이나 입장 직후에 기록부를 적는 경우에만 고객이 실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접촉 추적 작업에 사용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 기록부 절차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종이 양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책임 당사자가 설정한 모든 수단을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상술한 등록 데이터 기록을 최소 **28일** 동안 보관하고 주정부 및 지역 보건부가 요청할 경우,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핵심 활동에 더 짧은 거리가 필요한 경우(예: 요리, 청소, 테이블 치우기, 유지관리)가 아닌 한 책임 당사자는 직원들 간에 항상 최소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에 관계없이 책임 당사자는 모든 직원이 항상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고객은 착석한 동안을 제외하고 항상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 고객이 2세 미만이며 안면 가리개를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코로나19에 대해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에는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천과 안면 가리개 및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천, 일회용 또는 기타 수제 안면 가리개는 작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작업장소 활동에 적합한 안면 가리개는 아닙니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직업 안전 및 보건국 지침에 따라 정의된 대로 기존 업계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N95 마스크 또는 개인 보호 장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앉을 좌석이 있는 실내 테이블들이 사방에서 최소 6피트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테이블 간에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 테이블들 간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물리적 장벽의 높이는 5피트 이상이어야 하며 비상구 및/또는 화재 비상구를 막지 않아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음식 서비스 시설의 모든 상황에서 고객 수를 최대 점유 인원 또는 주정부의 단계별 재개의 일부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현재 사회적 모임 제한의 25%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즉, 4단계 지역에서는 50명 이하, 현재 2020년 9월 10일 기준).
- 책임 당사자는 테이블당 최대 10명 한도로 테이블이 허용하는 한 다수의 개인을 단일 테이블에 앉게 할 수 있습니다.
  - 한 테이블에 동석한 개인은 반드시 동일한 단체의 일행이어야 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단체의 일원인 사람들은 이들의 상호작용이 단체의 다른 일원들로만 제한되어 있는 한 다른 시간에 도착, 착석, 출발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단체의 손님이 동일한 대형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공동 테이블은 단체 사이에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바에 앉는 것과 바에서의 서비스를 금지해야 합니다. 바는 직원이 테이블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음료를 준비하는 장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주문, 지불 또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바로 오거나, 바에서 대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 고객에게 화장실을 사용을 허용하는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 내에서 그리고 화장실을 기다리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용을 수정하고/하거나 작업 스테이션 및 직원 좌석 영역의 수를 제한하여 직원들이 모든 방향(예: 좌우로 나란히 그리고 서로 마주 보는 경우)에서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매 사용 시 세척 및 소독을 하고 구역을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예: 픽업 스테이션, 금전 등록기), 책임 당사자는 공기 흐름, 난방, 냉방 또는 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역에 물리적 장벽(예: 플라스틱 차폐 벽)을 배치할 수 있으며 비상구 및/또는 화재 비상구를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 물리적 장벽을 사용하는 경우 직업 안전 및 보건국 지침을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 옵션에는 스트립 커튼,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또는 기타 불침투성 칸막이나 파티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동시에 해당 공간에 있는 모든 직원이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한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좁은 공간(예: 냉동 창고 또는 창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탑승자가 사용하도록 설계하지 않는 한 점유 공간이 공간 최대 수용 인원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안전 절차를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를 최대한 환기(예: 주방의 창문과 문을 열어 둠)하여 환기를 강화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좁은 통로, 복도 또는 공간에 화살표가 있는 테이프 또는 표지판을 사용하는 등 양방향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공동으로 사용되는 모든 영역 및 일반적으로 줄서기가 형성되거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예: 출퇴근 시간 기록대, 선별 스테이션, 휴게실) 모든 영역에서 6피트 거리두기를 나타내는 표지판 및 거리 표시를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공간에 6피트 거리두기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고객이 주문, 음식 픽업, 착석 또는 화장실 사용을 기다리는 모든 줄서기 공간(예: 테이프 또는 기타 동등한 수단 사용) 및
    - 모든 픽업 또는 지불 장소(예: 카운터, 테이블, 등록기)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하면 고객의 입구/출구와 직원의 입구/출구를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음식을 픽업할 준비가 되거나 착석할 준비가 될 때까지 차량 안에서 또는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밖에서 기다리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온라인 또는 전화로 원격 주문을 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비접촉식 주문, 지불, 배송 그리고 픽업 및/또는 커브사이드 픽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 비접촉식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지폐 사용을 최소화하고 종이 영수증만 제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착석하기 전에 사전 주문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곳곳에 보건부 코로나19 표지판과 일치하는 게시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표지판이 부서의 표지판과 일치하는 경우 직장 또는 환경에 따라 고유한 맞춤형 표지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을 사용하여 직원과 고객에게 다음 사항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 아플 때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직원의 경우 안면 가리개로 항상 코와 입을 가리고 고객의 경우에는 앉아 있는 중을 제외하고 항상 코와 입을 가려야 합니다.
  - 보건부 여행 권고에 따라 그들이 최근에 코로나19의 상당한 지역사회 전파가 있는 주를 방문했다면 격리합니다.
  - 개인 보호 장비를 제대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해야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개인이 코로나19에 대한 증상이나 노출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알립니다.
  - 손 위생과 세척 및 소독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적절한 호흡기 위생과 기침 에티켓을 따라야 합니다.
  - 833-208-4160번으로 전화 또는 855-904-5036번으로 'VIOLATION'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송신해 위반을 신고해야 합니다.

## B. 폐쇄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대면 직원 모임(예: 직원회의)을 최대한 제한하고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 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고용주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 동영상 또는 화상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상회의 또는 통신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통풍이 잘되는 열린 공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이 서로 6피트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의자가 있는 경우, 의자 사이에 공간을 두고 직원이 의자를 하나씩 띄어 앉게 함).
- 책임 당사자는 점유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필수적이지 않은 시설 및 직원 편의공간을 폐쇄하여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 편의 시설(예: 자동판매기, 공용 커피 스테이션) 근처에 있는 손 소독제 또는 소독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이나 휴게실과 같은 좁은 지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한 관행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점유 인원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판과 시스템(예: 사용 시 표시)을 개발해야 합니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직원들이 휴식, 식사 및 교대 시작/정지 등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즉, 6피트 공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정에 시차를 두어야 합니다.

### C. 근무지 활동

- 책임 당사자는 현지 시간 자정(오전 12:00)부터 오전 5:00 사이에 고객에게 음식 및 음료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단, 책임 당사자는 자정 이후에 고객이 서비스 종료 후 30분 동안 식사를 마칠 목적으로만 앉아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자정(오전 12:00)에 중단해야 하며 오전 5:00까지 재개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면 접촉 및 모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 반드시 있어야 할 직원만 있도록 제한합니다.
  - 근무 시간을 조정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 인력을 줄입니다.
  - 교대근무를 설계(예: A/B팀, 도착/출발 시간 교차)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허용하는 업무를 그렇지 않은 업무에 비해 더 우선합니다.
  - 예정된 작업 시간에 시차를 두고 사용 중인 구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통해 한 구역에 복수의 직원 및/또는 팀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 및/또는
  - 가능한 경우 활동을 분할하거나 함께 묶어서 개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동시에 장비에 손이 접촉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작업장소를 적절하게 청소 및/또는 소독하지 않는 한, 음식 준비 직원이 교대 중 작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직원의 작업장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웨이터/웨이트리스의 개별 작업 영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웨이터/웨이트리스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당의 특정 영역에서 서빙을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고객의 좌석 예약을 권장하여 착석 및 서빙을 기다리며 고객이 모이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기기(예: 버저)를 제공하여 좌석이나 주문이 준비되었다고 알려서는 안 됩니다. 단, 매번 사용할 때마다 기기를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책임 당사자는 주문이나 착석을 기다리는 고객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음성 안내, 문자 메시지 또는 화면상 알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셀프서비스가 아니며 고객이 공용 물체(예: 서빙 스푼, 집게)를 만지지 않고 적절한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직원을 갖춘 경우 뷔페를 열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고객 테이블에 제공할 음료를 준비하기 위해 실내 바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 좌석은 폐쇄되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고객이 바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D. 이동 및 거래

- 책임 당사자는 음식 서비스 시설에 출입하는 통행량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조절하여 최대 수용 인원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항상 정확한 수의 현재 시설 수용 인원을 유지하여 최대 수용 인원의 **25%**를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벤더 픽업 및/또는 배달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상호작용(예: 교대 근무를 끝낸 직원을 위한 출구, 교대 근무를 시작하는 직원을 위한 별도의 입구 지정) 및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예: 직원은 가능한 한 자주 작업장소 근처에 있어야 함).
- 구내에 들어와야 하는 벤더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한 번에 한 벤더만 제품을 배송하고 직원이 밀접 접촉 표면을 청소 및 소독한 후 다음 벤더가 구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번에 한 사람만 들어오는 절차를 구현해야 합니다.
- 실현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1) 건물로 유입되는 사람들의 통행량을 관리하고 (2) 화재 안전 및 기타 해당 규정을 준수하면서 아래에 설명된 건강 선별검진을 촉진하기 위해 출입 인원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선별을 위해 시설 내부 또는 외부에 줄을 설 때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II. 장소

### A. 공기 정화 및 환기 시스템

- 중앙 공기 처리 시스템을 갖춘 뉴욕시 음식 서비스 시설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중앙 냉난방 공조(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시스템 여과가 가능한 경우 현재 설치한 필터 랙 및 공기 처리 시스템과 호환될 수 있는, 최소한 최소효율성보고수치(Minimum Efficiency Reporting Value, MERV) 13등급 또는 업계 동일 수준 이상(예: 고효율 입자 여과 장치(high efficiency particulate absorber, HEPA))의 최고 수준의 여과를 만족하도록 하고, 공인 냉난방 공조 기술자, 전문가 또는 회사, 미국 난방, 냉방 및 공기 조절 엔지니어 협회(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ASHRAE** 인증 전문가, 공인 레트로 커미셔닝 전문가, 또는 뉴욕 공인 전문 건물 엔지니어가 기록하고 인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미국 난방, 냉방 및 공기 조절 엔지니어 협회** 권고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추가 환기 및 공기 여과 완화 절차 채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특히 공기 처리 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건물).
  - 중앙 시스템의 필수 레트로 커미셔닝 및 필요에 따라 검사, 균형 잡기 및 수리 실시
  - 가능한 범위에서 환기율 및 실외 공기를 이용한 환기 증가
  - 더 긴 시간 동안 시스템 가동을 유지(특히 점유 전후에 매일 몇 시간 동안)
  - 합당한 경우 수요 통제 환기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하고 신선한 공기 공급을 증가시키는 시스템을 유지
  - 가능한 경우 상대 습도를 40~60%로 유지하기
  - 가능한 범위에서 공기 재순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실외 공기 댐퍼 개방
  - 우회 제한을 위해 필터의 예지 실링
  - 정기적으로 시스템과 필터를 점검하여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필터가 적절히 설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잔여 수명이 남아있는지 확인
  - 점유 인원의 안전과 편안함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창문 개방
  -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의 비활성화를 위해 적합하게 설계 및 배치된 자외선 살균기(**ultraviolet germicidal irradiation, UVGI**) 설치 및/또는
  - 적절한 성능 수준에서 가장 높은 공기 교환 속도를 제공하고 유해한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는 장치를 고려한 휴대용 공기청정기(예: 전기 고효율 입자 여과 장치)를 사용
- 위에서 언급한 최소 정화 수준(즉, 최소효율성보고수치 13등급 이상)을 설치할 수 없는 뉴욕시의 음식 서비스 시설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현재 설치한 필터 랙 및 공기 처리 시스템은 상기 최소 수준의 정화(예: 최소효율성보고수치 13등급 이상)를 설치할 수 없거나 또는 높은 수준의 정화 시스템을 설치하면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이전과 동일한 최소 수준의 냉난방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록 및 인증할 공인 냉난방 공조 기술자, 전문가 또는 회사, 미국 난방, 냉방 및 공기 조절 엔지니어 협회 인증 전문가, 공인 레트로 커미셔닝 전문가 또는 뉴욕 공인 전문 건물 엔지니어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추가 환기 및 공기 여과 완화 절차와 더 낮은 여과 등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 또는 지역 보건부 공무원이 검토하기 위해 그러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또한 최소효율성보고수치 13등급 이상의 정화 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앙 공기 처리 시스템을 설치한 시설의 책임 당사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미국 난방, 냉방 및 공기 조절 엔지니어 협회** 권고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추가 환기 및/또는 공기 정화 완화 절차를 반드시 채택해야 합니다.
    - 중앙 시스템의 필수 레트로 커미셔닝 및 필요에 따라 검사, 균형 잡기 및 수리 실시
    - 가능한 범위에서 환기율 및 실외 공기를 이용한 환기 증가
    - 더 긴 시간 동안 시스템 가동을 유지(특히 점유 전후에 매일 몇 시간 동안)
    - 합당한 경우 수요 통제 환기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하고 신선한 공기 공급을 증가시키는 시스템을 유지
    - 가능한 경우 상대 습도를 40~60%로 유지하기



- 가능한 범위에서 공기 재순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실외 공기 댐퍼 개방
  - 우회 제한을 위해 필터의 예지 실링
  - 정기적으로 시스템과 필터를 점검하여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필터가 적절히 설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잔여 수명이 남아있는지 확인
  - 점유 인원의 안전과 편안함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창문 개방
  -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의 비활성화를 위해 적합하게 설계 및 배치된 자외선 살균기(**ultraviolet germicidal irradiation, UVGI**) 설치 및/또는
  - 적절한 성능 수준에서 가장 높은 공기 교환 속도를 제공하고 유해한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는 장치를 고려한 휴대용 공기청정기(예: 전기 고효율 입자 여과 장치)를 사용
- 중앙 공기 처리 시스템이 없거나 중앙 공기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는 뉴욕시 음식 서비스 시설의 책임 당사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미국 난방, 냉방 및 공기 조절 엔지니어 협회 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환기 및 공기 정화 완화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모든 공간 환기 시스템(예: 창문 시설, 벽면 부품)을 점검하여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필터가 적절히 설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잔여 수명이 남아있는지 확인
    - 더 긴 시간 동안 모든 공간의 환기 시스템을 가동 유지(특히 점유 후에도 매일 몇 시간 동안)
    - 신선한 공기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 환기 시스템을 설정하고 송풍기 팬을 저속으로 설정하고 가능한 한 점유 인원의 방향을 향하지 않도록 하기
    - 가능한 경우 상대 습도를 40~60%로 유지하기
    - 점유 인원의 안전과 편안함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창문 개방
    - 해당하는 경우, 모든 천장 팬을 점유 인원으로부터 위쪽으로 공기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도록 설정하기
    - 가능한 경우 실내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 창문의 팬을 우선하기
    - 적절한 배기를 제공하지 않고 공기만 순환시키거나 실내로 공기를 불러 넣는 팬의 사용을 피하기
    -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의 비활성화를 위해 적합하게 설계 및 배치된 자외선 살균기(**ultraviolet germicidal irradiation, UVGI**) 설치 및/또는
    - 적절한 성능 수준에서 가장 높은 공기 교환 속도를 제공하고 유해한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는 장치를 고려한 휴대용 공기청정기(예: 전기 고효율 입자 여과 장치)를 사용

## B. 주방 영역

- 직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책임 당사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주방 시스템에 대한 사전 복귀 점검 및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주방 직원이 항상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6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주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미리 업무를 하도록(예: 음식 준비) 교대 근무 시차를 두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주방 직원이 교대 업무 내내 한 작업장소(예: 샐러드 또는 그릴 또는 디저트)에서만 일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작업장소와 작업 구역 바닥에 테이프로 표시하여 모든 방향으로 6피트 거리두기를 알려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주방 직원이 직접 물건을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지 않고 다음 사람이 픽업할 수 있도록 카운터에 물건을 놓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직원이 바뀔 때 주방 장비(예: 칼, 냄비, 행주/수건) 공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C.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전직원이 항상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손 위생을 수행하고 주 및 지역 위생법에 따라 맨손 장벽(bare hand barrier)을 사용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비음식 준비 활동 중에 직원이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직원이 장갑을 자주 교체하도록 확인하십시오. 및
    - 작업을 전환할 때 직원이 장갑을 교체하도록 권장하십시오(예: 고객 서빙에서 실버웨어를 사전에 냅킨으로 마는 작업).
  - 직원이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손을 자주 씻거나/씻고 소독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테이블을 치우는 직원이 비누와 물로 손을 씻고 장갑을 끼고 있는 경우 테이블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후에 장갑을 교체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 한 경우에만 고객이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단, 고객의 나이가 2세 미만이며 안면 가리개를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테이블에 착석하지 않을 때도(예: 픽업 대기, 테이블으로/테이블에서 이동, 화장실로/에서 이동)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일단 착석한 후에는 직원과 상호작용할 때 또는 식사 및/또는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때에 고객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권장해야 하지만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특정 직장 활동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뿐만 아니라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조달, 제작, 또는 기타 방식으로 획득하고 직장에서 직원에게 비용 없이 그러한 가리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교체가 필요하거나 벤더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면 가리개, 마스크 및 기타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적절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에는 천(예: 수제 봉제, 킥 컷, 두건),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및 안면 보호대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안면 가리개는 사용 후 세척 또는 교체해야 하며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천 얼굴 가리개 및 기타 개인 보호 장비 유형에 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세척법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 천 얼굴 가리개 또는 일회용 마스크는 안면 가리개 요건에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하는 직장 활동에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로 간주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N95 마스크가 통상적으로 특정 음식 서비스 활동에 필요한 경우 천이나 수제 마스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안전 장비에 대한 직업 안전 및 보건관리국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자신의 허용된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직원이 자신의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본 지침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추가 보호 가리개(예: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안면 보호대)를 추가로 착용하는 것을 막거나 책임 당사자가 달리 업무 성격상 직원에게 더 보호가 잘 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적용가능한 직업 안전 및 보건국 기준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주방, 도구, 펜 및 패드, 그리고 문 손잡이, 키패드 및 터치스크린 등 공유 표면의 접촉 등 물체의 공유를 제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는, 공유된 물체 또는 자주 접촉하는 표면과 접촉할 때 직원에게 장갑(적절한 업무용 또는 의료용)을 착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는 직원에게 접촉 전후에 손을 씻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PPE를 적절하게 착용하고, 벗고, 세척하고(해당되는 경우),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 D.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 민간 및 공공시설 청소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해당되는 경우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보건부가 권고하는 위생 및 소독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 일자, 시간 및 범위를 포함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근무지에서 다음과 같이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 및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 비누, 따뜻한 물, 일회용 종이 타올.
  - 손 소독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서 최소 60%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
  - 책임 당사자는 접촉이 잦은 구역(예: 화장실 밖)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입구, 출구, 계산대 등 편리한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비접촉식 손 소독제 디스펜서를 설치할 권장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손이 눈에 띄게 더러워졌을 때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를 손 살균 스테이션 근처에 배치해야 합니다. 손소독제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 개인 보호 장비를 포함하여 더러워진 품목을 폐기할 수 있도록 현장 주변에 쓰레기통을 배치하십시오.
- 테이크아웃/배달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음식 및/또는 음료를 기다리는 고객을 위한 손 위생대를 제공함.
  - 직원이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직원이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확인하십시오. 및
  - 픽업/배달을 실내/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경우 환기가 가능하도록 창문 및/또는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공유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에 적합한 청소 및 소독용 비품을 제공하고 직원이 제조업체의 사용 지침에 따라 이러한 표면의 사용 전후에 손 위생을 준수하여 이러한 비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영역과 자주 접촉하는 표면에 대해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최소한 교대 후 매번,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수행해야 합니다. 시설 청소 및 소독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보건부의 "코로나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정기적으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횟수에 따라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간판, 사용 중 표시 또는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화장실 사용 인원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최소한 직원이 작업장소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도구 세트로 이동할 때마다 청소 및 소독하는 것을 포함하여 등재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장비 및 도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뉴욕주에 등재되고 환경보호국에 의해 코로나19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세척 또는 소독 제품 또는 세척 및 소독 활동으로 인해 안전 위험이 발생하거나 재료 또는 기계류가 손상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손 소독대를 설치하고/하거나 충분한 일회용 장갑을 제공하고/하거나 해당 기계류를 사용하는 직원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노출된 구역의 청소 및 소독을 위해 최소한 통행량이 많은 모든 구역 및 접촉이 잦은 표면(예: 공유 도구, 장비, 기계, 작업장소, 키패드, 전화기, 자판기, 공용 커피머신)을 포함하여 해당 청소 및 소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이 사용한 영역을 폐쇄합니다.
    - 영향을 받은 지역을 폐쇄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해야 합니다.
    - 푸드 트럭의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되는 경우, 푸드 트럭은 청소 및 소독 될 때까지 폐쇄해야 합니다.
  - 해당 구역의 공기 순환을 높이기 위해 외부 문과 창을 여십시오.
  - 24시간이 지난 후 청소 및 소독을 하십시오. 24시간이 가능하지 않으면 최대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사무실, 욕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장비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나 확진자가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 해당 구역을 적절히 청소하고 소독한 후에는 재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나 확진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하지 않은 직원은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작업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근접 또는 밀접" 접촉에 대한 정보는 보건부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노출 후 공공 또는 민간 근로자의 업무 복귀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를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사용한 후 7일 이상 지난 경우, 추가 청소 및 소독은 필요하지 않으나 정기적 청소 및 소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들 간 음식 및 음료 공유를 금지하고, 점심을 집에서 가져오도록 권장하고, 직원이 식사를 하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직원이 일반적으로 고객이 사용할 실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사 또는 음료를 마시는 동안 안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이들이 서 있거나 테이블에서 이동하는 경우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며, 이러한 식사 구역에 대한 25% 점유 인원 제한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식당의 공용 공간이 아닌 곳에서 식사하는 직원의 경우 수용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직접 제공되는 모든 양념류가 일회용 용기 또는 정기적으로, 이상적으로는 매번 사용할 때마다 세척 및 소독하는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담아야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손님에게 일회용 종이 메뉴 제공 및/또는 가능한 경우 메뉴가 화이트 보드/칠판/TV/프로젝터에 표시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일회용이 아닌 메뉴를 사용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메뉴를 사용한 후 매번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고객이 온라인(예: 자신의 스마트폰 또는 전자 기기)에서 메뉴를 보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전 포장된 실버웨어 또는 사전에 냅킨으로 말아 둔 실버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버웨어를 사전에 말아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포장되지 않은 빨대와 이쑤시개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E. 단계적 재개

- 책임 당사자는 생산 또는 작업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기 전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활동 재개를 권장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재개방 시 변화에 적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 수, 시간, 서비스 제공 고객 수를 제한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F. 의사소통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에서 발행한 산업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고객을 위해 다음을 식당 내부 및 식당 외부(예: 문에 게시)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 시설 수용 인원의 25%에 해당하는 고객 수 및
  - 위반 사항을 신고할 전화번호 및 문자 번호
    - 위반 사항을 발견한 이들은 833-208-4160번으로 전화 또는 855-904-5036번으로 'VIOLATION'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송신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벤더 및 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지침, 교육, 표지판 및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관된 수단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 페이지, 문자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III. 절차

## A. 선별 검진 및 검사

- 책임 당사자들은 직원과 고객이 음식 서비스 시설 도착 전 또는 직후 체온 검사를 받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체온이 100.0°F 이상인 경우, 직원과 고객 모두 시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건물 입구에서 비접촉 열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식별하고 이차 선별 구역으로 안내하여 후속선별을 완료합니다.
  - 체온 측정은 반드시 온도 검사는 미국 평등 기회 고용 위원회(U.S. Equal Opportunity Employment Commission) 또는 보건부 지침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또는 고객 건강 자료(예: 개인의 특정 체온 자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수 없지만, 개인이 선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기록 및 선별 결과(예: 합격/불합격, 허가/허가되지 않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각 고객 단체에서 최소 한 명의 사람이 음식 서비스 시설에 입장 시(또는 사전 원격 서명) 기록부를 작성하고 접촉자 추적에 사용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앞서 언급한 의무 체온 검사와 더불어,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가능한 경우 벤더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일일 건강 선별 검사 관행을 시행해야 하지만, 그러한 선별 검사는 고객 및 배달 직원에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 선별 관행은 직원이 현장에 출근하기 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수행(예: 전화 또는 전자 설문 조사)할 수 있으며, 또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선별이 완료되기 전에 직원이 서로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선별을 조정해야 합니다.
  - 최소한 모든 직원과 벤더에게 선별 검사가 필요하며 근로자 또는 직원 또는 벤더가 다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a) 알면서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자 또는 코로나19 유증상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했음.
    - (b)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 대한 양성 반응 여부.
    - (c)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의 증상을 하나라도 겪음 및/또는
    - (d) 지난 14일 이내에 24시간 이상 상당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있는 주를 여행함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건강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할 수 없지만, 고객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최신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있는 주와 검역 요건에 대한 최신 정보는 보건부 여행 권고를 참조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앞에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변경되는 경우, 근무 시간 중 또는 근무 시간 외를 포함하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와 같은 때에 즉시 알리도록 직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체온 점검을 포함하여 선별 검사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현장에 들어가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직원 및 벤더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해야 합니다. 선별 검사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은 운영자가 식별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보건부 및 직업 안전 및 보건국 절차에 정통한 개인에 의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별 검사자는 최소한 안면 마스크를 포함하여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받아 사용해야 하며 장갑, 가운 및/또는 안면 보호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선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은 절대 구내에 출입할 수 없으며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반드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평가 및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을 받아 자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가 확인된 후 또는 직원이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한 후 직원이 작업장에 돌아가려는 경우 절차 및 정책에 대해 보건부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노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공무원 및 민간 직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활동, 위치, 근무 또는 일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모든 설문지를 받고 검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앙 연락처를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연락처는 개인이 후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설문지에 통보된 대로 알릴 당사자로 식별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 등을 담당하는 현장 안전 모니터 요원을 지정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작업 현장 또는 구역의 다른 개인과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직원 및 벤더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한 고객이나 비접촉식 수단을 통해 수행하는 배송은 제외합니다. 개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모든 접촉을 식별, 추적 및 통보할 수 있도록 기록에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주 및 지역 보건부의 접촉자 추적 노력에 협력해야 합니다.

## B. 추적 조사

- 시설에서 고객 또는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즉시 주 및 지방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
- 사업체에서 상호작용한 직원, 벤더 또는 고객이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와 협력하여 작업장소의 모든 접촉을 추적하고, 일지에 기록된 모든 직원 및 개인이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거나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시점 중 이른 시점부터 48시간 전에 음식 서비스 장소에 입장한 방문객/고객(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현장이 소재한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방 및 주법, 규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개인이 음식 서비스 시설 내에 있다가 증상을 보이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변의 직원 또는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사람에게 즉시 해당 유증상자의 구역 내 동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만약 유증상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주 및 지역 보건부는 법적 권한에 따라 자택 분리 및 격리를 포함하여 감염자 또는 노출자에 대한 관리 및 이동 제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와 근접 또는 밀접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과 추적 또는 기타 매커니즘으로 통보받은 사람은 자신의 고용주에게 통보 시점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기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작성된 안전 계획을 직원을 위해 현장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사업체 소유자 및 운영자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안내하는 사업체 재개 안전 계획 템플릿을 제공했습니다.

추가 안전 정보, 지침 및 자료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아래 링크에서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할 의무를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십시오.](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